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토관리 부문의 자동적 처분 도입》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88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제221258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국토관리 부문의 자동적 처분 도입(안 제4조의3 신설)	2

I.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제221258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9. 2.

다. 회 부 일 : 2025. 9.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과거의 단순 정보처리 수준을 뛰어넘어, 미래 예측과 새로운 정보 생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행정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님. 이미 「행정기본법」 제20조는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의 영역 중 국토와 도시의 계획 및 관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함.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AI 기반의 자동적 처분 시스템은 도시 정책 수립, 인프라 운영, 환경 및 재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토·도시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이에 국토관리의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3. 검토의견

가. 국토관리 부문의 자동적 처분 도입(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3(국토관리를 위한 자동적 처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공포한 날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활용하여 처분(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행정 영역에의 도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¹⁾ 제20조²⁾에서는 기속행위에 대한 자동적 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1) 법률 제17979호, 2021.3.23., 제정

2)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행정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자동적 처분에 대한 사항의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나, 개정안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도 자동적 처분 근거를 명시하여 국토·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을 첨단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동적 처분의 기본원칙은 이미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 대상 및 절차 등은 해당 개별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계획 및 정책 수립은 단순·반복 업무가 아닌 종합적 의사결정으로 자동화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4

참고

개별법에서 자동적 처분 사항을 정한 입법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은 수입식품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수입식품등
2.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4.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